

주성엔지니어링(주)

경영위원회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 내에 설치된 경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고 함)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② 위원회는 직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의 업무를 감독·조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 때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제 6조의 각 부의사항,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회사 주요 경영사항을 토의, 심의 및 의결하고 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사내이사 임기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
- ③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대행자의 지명 방법은 이메일, 서면 등으로 한다.

제6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기술개발활동에 관한 사항

1. 당해연도 연간 연구개발비 예산 수립
2.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집행 실적 보고(연 1회)
3. 연구개발의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속 여부 심의 및 의결
4. 개발완료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확보 조치
5. 중단 및 실패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사후처리 및 대안 보고
(회계처리까지 포함한다.)
6. 그 외 기술개발활동과 관련해 위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기타 행위

②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

1. 영업활동을 위해 체결하는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
 - 가. 비밀유지계약(NDA)
 - 나. 공동개발계약(JDA)
 - 다. 에이전트 관련 계약
(단, 고객으로부터 구매요청서(PO)가 확정 발급되어 수수료 지급 규모가 확정될 경우, 그 내용에 대해 다음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)
 - 라. 신규사업 추진 위한 회사 설립 관련 계약
2. 신제품 공급조건(컨셉 및 사양, 판가, 납기, 대금결제조건) 결정
3. 고객 요청 납기 준수 위한 선제적 대응 진행
4. 프로젝트 승인 예산 초과 건
5. 신규사업 진행 및 기존사업 중단
6.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해지
7. 그 외 영업활동과 관련해 위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중요한 계약 및 기타 행위

③ 재무에 관한 사항

1. ~~총자산 0.1% 이상 1% 미만~~의 **5억 이상 50억 미만**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, 처분 및 양도
(중요한 자산의 기준은 경영위원회의 판단)

2. 자기자본 ~~2.5% 미만~~ 50억 미만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 및 처분
3. 자기자본 ~~2.5% 미만~~ 50억 미만의 담보제공, 채무보증 및 채무면제
4. 자기자본 ~~5% 미만~~ 50억 미만의 시설투자(공장신설 및 증설)
5. 자기자본 ~~5% 미만~~ 50억 미만의 신규 차입
6. 기존 차입금에 변동을 주는 행위(한도증액, 기한연장, 상환 등)
7. 통화선도 계약 및 파생상품 약정
8. 선급금 지급보증 발행
9. 직원 및 타인 대여금
10. 그 외 재무관련 주요 현안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④ 기타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

1. 당사가 피소되거나 제소하여 계류중인 소송 및 중재에 관한 사항
2. 영업활동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외 위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계약
3. 당사 의사결정기구 운영규정 및 기타 사규, 사칙의 제정, 개정 사전 보고
4. ESG 경영에 대한 연간 단위 중점 추진 과제 설정, 구체적 실행계획 및 활동성과 보고 및 심의 (연 1회)
 - (1) 환경경영 및 환경성과
 - 가. 당해연도 환경목표 수립 및 추진(시설 등에 대한 신규투자계획 포함)
 - 나. 당해연도 용수 이용량, 폐기물 배출량,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평가 보고
 - 다.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고도화
 - 라. 당해연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실적 평가 보고
 - 마. 당해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위반 적발 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 보고
 - (2) 사회적책임경영
 - 가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업장 내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내부규정 설립 및 개정
 - 나. 당해연도 당사가 수립한 안전정책에 대한 근로자 위반사례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
 - 다.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내부 감시 체계 구축

및 개선

라. 당해연도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법률에 대한 당사 임직원의 위반사례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

마. 협력사와 체결하는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 (NDA 및 구매계약서)

바. 회당 1억원을 초과하는 사회공헌(기부금) 집행

(3) 기업지배구조개선

가. 주주권리보호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(배당지급판단기준 및 배당형태 포함) 수립 및 개정

나. 주주가치 및 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검토

5. ESG와 관련된 법규정 재개정에 따른 위반 리스크 및 규제준수 위한 집행 비용 보고

6. 그 외 ESG경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보고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7. 연간 성과평가측정 계획 및 체계 수립 보고

8. ~~연간 성과보상 계획 수립 및 집행(현금 및 주식보상) 보고~~

8. 이익배분 계획 수립 및 집행(배당, 자사주매입, 인센티브 등) #별첨 1

9. 기타 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 (회의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소속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
③ 위원회는 결의한 내용을 이사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이사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 결의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결의방법은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 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 보존한다.
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록 원본은 위원회 주관부서에서,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에서 보관하되, 10년간 보존한다.

제9조 (자료요청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0조 (규정의 개정 및 폐지)

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제11조 (간사)

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록 작성을 포함하는 위원회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 <신설 조문>

:

별첨 1

1. 이익배분의 목적 및 규정

1-1 이익배분의 목적

명확한 이익배분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시스템 구축

1-2 이익배분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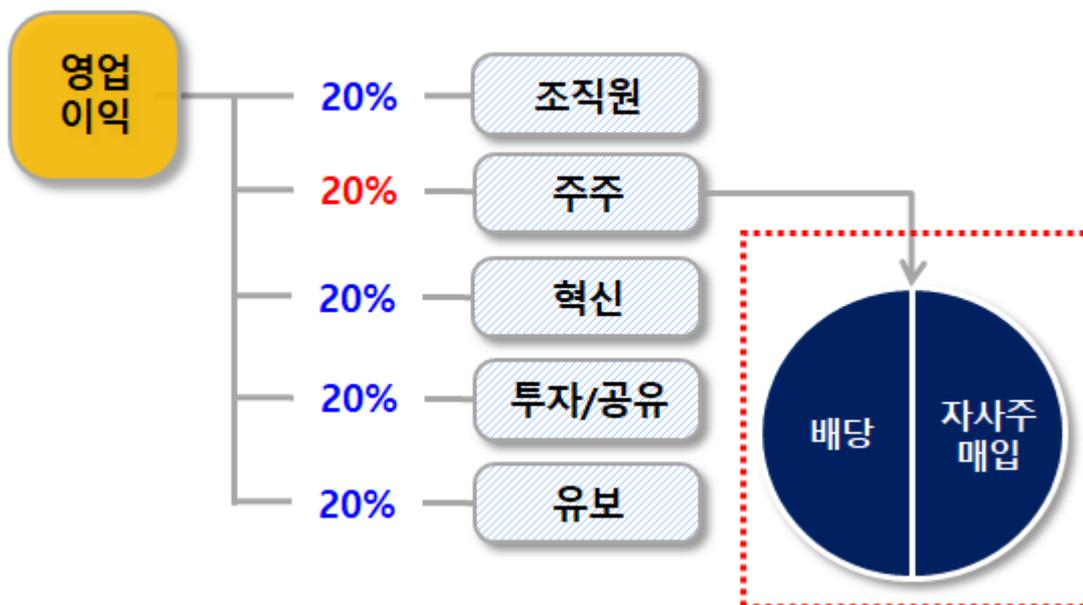
회사의 경영성과(영업이익)에 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
(단, 회사 경영환경 및 성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비율 조정 가능)

- ① 조직원(20%)
- ② 주주(20%)
- ③ 혁신(20%)
- ④ 투자/공유(20%)
- ⑤ 유보(20%)

*: ① 조직원, ② 주주의 경우 매출액, 영업이익률 구간별 배분 비율을 달리함

*: ② 주주의 경우 총 재원을 1) 배당, 2) 자사주매입으로 할당함.

(단, 주주에 대한 이익배분 방안은 변경될 수 있음)

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